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821

발의연월일 : 2019. 8. 1.

발 의 자 : 남인순・신창현・송영길
박홍근・맹성규・김영춘
기동민・정춘숙・최도자
김철민・한정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내에서 제조・가공・조리・소분・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’을 마련하고,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’로 인증하는 한편, 김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’을 지키는 해외

제조업소를 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’로 인증하도록 하는 한편,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‘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’에서 생산·제조·가공·처리·포장·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이하 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(이하 “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”라 한다)로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.

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·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·제조·가공·처리·포장·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·평가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3. 조사·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·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, 인증 및 조사·평가 등의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요건·절차·비용,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·비용 및 제5항에 따른 조사·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(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)하는 수입식품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이하 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(이하 “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”라 한다)로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.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설치·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	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·제조·가공·처리·포장·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.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·평가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	1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. 조사·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·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, 인증 및 조사·평가 등의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

	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요건·절차·비용,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·비용 및 제5항에 따른 조사·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